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및 정가·수의매매 관련 사용료 규정 변경 등을 반영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임의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시장의 임의 규정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22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 40조, 안 제65조, 안 제86조, 안 제94조)
- 나.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법인의 변동사항 보고기한을 10일로 연장함(안 제16조, 안 제30조제2항)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 상한 및 사용료 요율 및 범위를 정함(안 제42조의2, 안 제62조, 안 제63조)
- 라.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시행령에 따른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 한도를 정함(안 제70조의2, 별표6)

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제31조, 제77조, 제78조의2, 제82조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6조의2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의2, 제39조, 제44조
- 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유통”을 “「농수산물 유통」으로, “법률시행규칙(이하”를 “법률 시행규칙」(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류 및 유지작물과”를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때는 그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를 “장부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을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3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을 “제44조제1항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에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표준정산서

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 명	귀 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거래 방법	년	월	일	품목 및 품 종	단위별 단 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 액	매수인
계										
송금내역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운 입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급금			
							지불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 과학경제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법인대표(또는 공판장장)로 한다.(개정)

④위촉직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교수, 시의원, 유통관련전문가,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청	상호명	(전화번호 :)		
인	참가 도매시장명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거래품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1부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주주명부 1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허가번호		중 도 매 업 허 가 증		(사진부착) 가로3cm×4cm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형 태 개 인 · 법 인
허가 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 터 까 지 (년 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중도매업허가번호	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 중도매법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중도매인 · 법인 신고서				
신	주 소			
	상 호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참 가 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신고사항		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등		
신고 내역	내용(변경)			
	사 유			
	기 간			
도매시장 법인경유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 표 (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신고번호		매매참가인 신고필증		
신고인	성명또는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상호			
	주거래참가 도매시장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거래품목			
	신고일자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별지 제13호서식】

등 록 번 호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증 사진 (2.5×3.5cm)		
년도-일련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참가 시장명			
취 급 부 류 (품 목)			
등 록 일 자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준 수 사 항

1. 등록된 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포전매매시에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점포번호 및 면적	
	주거래법인		전화번호	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	품목			
	취급계획	물량	금액	
	기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허가번호	상 장 예 외 품 목 거 래 허 가 증			사진3cm×4cm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		전화번호	(자택)	
			(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별지 제22호서식】

거 래 성 립 최 저 가 격 신 청 서				
성명(출하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품 목	중량 및 규격	수 량	최저가격	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출하손실보전심사청구서

성명(출하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 용			
품목	규격	수량	해당물품 경락가격
비교기준경락 물품 가격	차액	손실신청 금액	비고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보고서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보고서

중도매인 성명		상 호		연락처	
기 간	20 . . . ~ 20(년 /4분기)				
일 자	품 목	수 량	구매가격	판매자	
				상 호	성 명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이하 ----- ----- ----- -----.
제3조(거래품목)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식류 및 <u>유지작물과</u>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 (생 락)	제3조(거래품목) ----- ----- -----. 1. ----- -----선류, 인삼류 중 수삼 및 <u>유지작물류와</u> -----. 2. (현행과 같음)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1. ~ 4. (생 락) ②·③ (생 락)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 ----- <u>각 호의</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 및 시행규칙 제 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 」(이하 ----- ----- -----

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
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지정조
건 이행계획

② ~ ④ (생략)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외에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
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

제8조(지정절차) ①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

-각호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람이나 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의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임원이 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②
(생략)

③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는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때는 그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0일 이내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장부비치) ① -----

-----각 호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부 -----

-----.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 7. (생략)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시장은 지정취소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인의 매매 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0일 이내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
-----각 호의 -----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절차) ①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30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생 략) ②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u>3일 이내</u>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5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중 도매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3조, 제34조, 기타 법령 또는 법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에는 시장은 허가취소등 행정처 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취소) ①·② (생 략) ③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 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을 때 3.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등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일 이내 -----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중 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생략)

제40조(불량출하자 제재방법) 시

장은 숙박이, 수량, 중량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등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

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 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

<신 설>

제65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규격기준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에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삭 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요율(원/톤)
배추	6,000원/톤
무	3,000원/톤
마늘	5,000원/톤
양배추	3,000원/톤
파	1,000원/톤
양파	3,000원/톤

③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 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

여금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
퍼센트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
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제구입·포장제구입비 지
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시장시설개선·장비구
입·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
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
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

<신 설>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영 제36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79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94조(별점제도)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중도

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시설사용 관리) -----
 ---각 호의 -----

 --.

1. ~ 7. (현행과 같음)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
 -----시장은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벌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

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 ④ 생략

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14.3.24.>

⑥ 생략

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11.7.21.]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 ⑤ 생략

[전문개정 2011.7.21.]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3.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

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 ~ ④ 생략 <개정 2013.3.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생략

[전문개정 2011.7.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 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생략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삭제 <2008.10.15.>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

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월 31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 ~ ⑧ 생략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소관 실·과·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 안 자	소 장	이 창 국
	담 당	정 종 택
	담 당 자	김 효 섭 (480-4762)